

평가지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실시되는 각종 평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가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평가의 범위) 평가지원단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 또는 추진한다.

1. 대학자체평가
2. 대학평가인증제
3. 기타 대학평가

제3조 (기구) ① 평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각 평가별 팀을 둘 수 있다.

② 평가업무 지원을 위하여 평가지원본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구성) ① 평가지원단에는 단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기능) 단장은 각 평가 준비 총괄의 역할을 담당한다.

제6조 (협조) 평가지표별 피평가 학과 및 행정부서의 장은 원활한 평가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지원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 (기타사항) 대학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대학자체평가 규정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폐한다.